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890

발의연월일: 2020. 9. 15.

발 의 자 : 권칠승・황 희・오영환

최혜영 · 최종윤 · 김남국

남인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10년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 및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함. 더불어 장애인 폭력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이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현장출동하여 학대받은 장애인을 행위자와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민간 장애인복지관련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취업 및 노무 제공에 제재가 부재함. 이에따라 장애인복지관련기관 생활자 및 이용자는 성범죄에 노출될 위험성이 큼. 더불어 응급조치의 일환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관련시설 등에 학대받은 장애인에 대한 입소를 요청하여도 시설측에서 거부를 하여 학대피해자에 대한 적절

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함.

이에 민간 장애인복지관련기관에서의 성범죄 전과자 취업제한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장애인 성범죄를 예방하고 장애인관련시설이 정당한 사유없이 학대피해자 입소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이를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학대 피해자들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 제59조의7, 제59조의15 및 제90조).

법률 제 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3제1항 중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법인 (이하 "장애인복지 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 장"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시장"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을 "장애인 복지관련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장애인복지시설"을 각각 "장애인복지관련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시장"을 "보건복 지부장관·시장"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을 각각 "장애인복지관련기관" 으로 하고. 제7항 및 제10항 중 "시장"을 "보건복지부장관·시장"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을 "장애인복지관련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및 제11항 중 "장애인복지시설"을 각각 "장애인복지관련기관"으로 한 다.

- 1. 장애인복지시설
- 2. 「민법」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장애인

복지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제59조의7제2항 중 "출동한 자는"을 "출동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인도하여야 한다"를 "즉시 피해장애인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각호의 기관 또는 시설에 인도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의7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재59조13의 피해장애인 쉼터
- 2. 의료기관
- 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기발달장 애인쉮터
- 4. 그 밖에 학대받은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59조의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9조의15(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장애인학대사 건의 피해장애인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 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90조1항 중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가 제59조의3제10항에 따른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제2항 중 "장애인복지시설"을 "장애인복지관련기관"으로 한다.

- 1. 장애인복지관련기관의 운영자가 제59조의3제10항에 따른 해임요 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 는 경우
- 2. 제59조7의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학대받은 장 애인의 인수를 거부한 자

법률 제11240호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4조 제목 중 "장애인복지시설"을 "장애인복지관련기관"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개 했 정 아 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성범죄(「성폭력 등) 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 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 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 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 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 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 (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 다)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 --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법 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 인 (이하 "장애인복지관련기관" 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취업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성범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 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 제한명령"이라 한다)----

(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 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 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 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②·③ (생 략)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9 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려는 자가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직접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의 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는

<u>.</u>
1. 장애인복지시설
2. 「민법」제32조에 따라 보건
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
아 장애인복지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②・③ (현행과 같음)
④ <u>보건복지부장관·시장</u>
- <u>장애인복지관련기관</u>
<u>장애인복지관련</u>
<u>기관</u>
<u>보건복지부장관·시장</u>
<u>보건복지부장관·시장</u>
<u>보건복지부장관·시장</u>
<u>보건복지부장관·시장</u>

그 시설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 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장애인복지성별 운영자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성범 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u>장애인복지시설</u>을 운영 하거나 <u>장애인복지시설</u>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 상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 항에 따른 확인·점검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u>장애인복</u> 지시설 운영자에게 관련 자료

장애인복지관련기관
⑥ <u>보건복지부장관·시장</u>
<u>장애인</u>
<u>복지관련기관장</u>
애인복지관련기관
⑦ <u>보건복지부장관·시장</u>

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⑧ (생략)
- ⑨ 시장·군수·구청장은 취업 제한명령을 위반하여 <u>장애인복</u> 지시설을 운영 중인 <u>장애인복</u> 지시설 운영자에게 운영 중인 <u>장애인복지시설</u>의 폐쇄를 요구 하여야 한다.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취업 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취업하거 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 람이 있으면 해당 <u>장애인복지</u> 시설 운영자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u>장애</u> 인복지시설 운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9항에 따른 폐쇄 요구를 거부하거나 3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u>장애인</u> 복지시설을 폐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⑧ (현행과 같음)		
9		
<u>장애인복지</u>		
<u>관련기관장애인복</u>		
<u> 지관련기관</u>		
<u>장애인복지관련기관</u>		
⑩ 보건복지부장관・시장		
<u>장애인복지관련기관</u>		
① <u>장애인</u>		
복지관련기관		
<u>장애인복</u>		
지관련기관		

①·①·① (생 략)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학대현 ② -----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장 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 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 -----즉시 피해장애인 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여 야 한다. <후단 신설>

<신 설>

③ ~ ⑥ (생 략) <신 설>

- ① ① (현행과 같음)
- 제5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① 제5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① (현행과 같음)

 - ----출동한 장애인권익옹호기 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각호의 기관 또는 시설에 인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 관 또는 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제59조13의 피해장애인 쉼터 2. 의료기관
- 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
- 4. 그 밖에 학대받은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③ ~ ⑥ (현행과 같음)

기발달장애인쉼터

제59조의15(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장애 인학대사건의 피해장애인 및 제90조(과태료) ① 장애인복지시 설의 운영자가 제59조의3제10 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신 설>

<신 설>

②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가 ② 장애인복지관련기관-----제5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취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 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에 관 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 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9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 1. 장애인복지관련기관의 운영 자가 제59조의3제10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제59조7의제2항 후단을 위반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학대 받은 장애인의 인수를 거부한 자

업자등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	
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